

# 모의 재외선거 참가신청서

## (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)

※ 굵은선 안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성 명 <sup>1)</sup>	한 글 (한 자)		영 문 (NAME)		
생 년 월 일			성 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	
말 소 된 주민등록번호 <sup>2)</sup>					
여 권 사 항	여 권 번 호		발 급 일 자		유 효 기 간
연 락 처 <sup>3)</sup>	전 화 번 호 (휴대전화)	( )	전 자 우 편 <sup>4)</sup> (E-mail)	@	
부 모 성 명 <sup>5)</sup>	부 성 명		모 성 명		
대 한 민 국 최 종 주 소					
등록기준지 <sup>6)</sup>					
국 외 거 소 <sup>7)</sup> (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)	거류국명		우편번호		
	거소(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)				
붙 임 서 류 <sup>8)</sup> 제 출 여 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여 권 사 본	<input type="checkbox"/> 비 자 사 본	<input type="checkbox"/> 영 주 권 또는 장 기 체 류 증 사 본	<input type="checkbox"/> 거 류 국 외 국 인 등 록 부 등 본	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국 적 확 인 서 류 ( )
외 국 국 적 <sup>9)</sup> 보 유 사 항	외 국 국 적 명	외 국 국 적 취 득 사 유		외 국 국 적 취 득 일 자	

본인은 「국적법」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모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5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하며, 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한 국적·연령·수형 사실·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

붙임 : 1. 여권사본 1부.  
2. (비자사본)·(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 사본)·(외국인등록부 등본) 1부.  
3. (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)·(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)·(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)·(외국국적 포기유보확인서)·(외국국적포기확인서)·(병적증명서) 1부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·날인)<sup>10)</sup>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재외투표관리관 확인 <sup>11)</sup>	접수 공관명		확 인 결 과	적합·부적합
	접 수 일 자		부적합 사유	
	확 인 자	직 위	성 명	(인)

- ▶ 위 서식은 모의선거 실시를 위해 실제 재외선거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식을 이용해 작성한 것입니다.
- ▶ 모의선거 참가신청서는 공관 방문 이외에도 우편·팩스·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실제 선거에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▶ 작성하시기 전 뒷면에 기재된 기재요령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## 기 재 요 령

- 주 : 1. 성명의 “한글(한자)”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있는 이름을 적고, “영문”란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 이름을 대문자로 적습니다.
2. “말소된 주민등록번호”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신청인에 한하여 적습니다.
3. “전화번호”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거류국의 국가번호-지역번호-전화번호를 적고, 휴대전화번호는 ( )안에 적습니다.
4. “전자우편”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·발송하는 정당·후보자 정보자료(모의선거용), 모의선거에 관한 안내자료 등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습니다.
5. 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부·모성명을 적습니다.
6. “등록기준지”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.
7. “국외거소”란은 투표용지와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 거류국명을 포함하여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적어야 하며, 거소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거소가 잘못 적힌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.
8. 신청서에는 여권사본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비자사본,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사본,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, “붙임서류 제출 여부”란의 해당 서류에  표시합니다. 붙임 서류는 모의선거인 모집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9.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비자·영주권·장기체류증의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대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,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,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,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, 외국국적포기확인서, 병적증명서 등)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10. “서명·날인”란에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
11.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공관에 하여야 하므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적습니다.